

# 대신대학교 계약(임시)직원 임용과 관리 규정

제정 2020. 08. 0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직원인사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우리 대학교 계약(임시)직원의 임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직원: 임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기간제계약직원: 임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다만, 대학업무의 유경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자를 특임계약직원이라 함
3. 무기계약직원: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계약직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계약직원의 직무구분) 계약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조교: 일반직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보조하는 자
2. 전문직 종사원: 학예사, 입학사정관, 시험·검사원 등 특정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
3. 기능 보조원: 전기, 통신, 전산, 목공, 시설관리, 원예, 운전, 교환, 경비, 환경미화 등 기능분야 업무를 보조하는 자
4. 그 밖의 필요에 의해 지정한 분야의 종사자

제5조(정원) 계약직원의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

## 제2장 채용

제6조(임용권자) 계약직원의 임용은 총장이 임용하되, 채용 시 인사부서의 합의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채용의 방법) ①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전문직 직무인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선 채용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임용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기간제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직원을 임용할 경우 별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재계약) ① 기간제계약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결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해 기간제계약직원은 당연 퇴직한다.

제10조(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평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장 복 무

제11조(복무 등) 복무와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12조(직무의 제한) 기간제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의 특임계약직원은 예외로 한다.

1. 우리 대학교 일반직원의 책임업무에 속하는 사항
2. 우리 대학교의 기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속하는 사항

제13조(면직 및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권으로 면직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4.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6. 예산의 감소 또는 기타 사유로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사업이 종료된 경우

## 제4장 신분 및 보수

제14조(무기계약직원의 정년) 무기계약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2월말 혹은 8월말)로 한다.

제15조(보수) ① 보수는 연봉액으로 정하여 12월로 분할 지급하되 해당부서별 수입 또는 교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회보험의 가입)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직원이 퇴직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취업규칙에 의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계약직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근로계약서

사용자	기관명	대신대학교	대표자	총장	
	주소	경북 경산시 경청로222길 33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당사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근로장소	대신대학교 캠퍼스를 주로 하되, 업무의 필요시 근로 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담당업무	_____의 _____업무 및 기타 필요에 따른 지시 업무				
직종			고용계약기간		
임금의 구성 계산방법 지급방법	계산방법	연봉제		월지급액	원
	① 연봉액 : _____ 원 (월지급액은 봉급, 고정급, 제수당, 명절수당, 급량비로 구성되어 정액지급되며, 명절교통비(설, 추석 각 _____만원)는 해당 월에 지급함. 위 연봉액 이외에는 일절 지급하지 아니하며, 학교 내 기타 임금관련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임금은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일할 산정의 필요시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해당 월의 _____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로 입금한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 5일(월~금)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근무시간: 09:00 ~ 17:00(휴게시간: 12:00 ~ 13:00)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름				
고용조건	①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지없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단,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계약의 갱신 내지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 만료 전까지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도중 기구의 축소 또는 인원감축의 필요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전까지 통보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대신대학교의 제 규정 및 근로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 규정에 의거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교 계약직원에게 적용하는 제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학교의 제 규정 중 특별히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대신대학교의 제 규정을 인지하고 급여구성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들었으며, 당사자 간에 자유의사로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이후 본 계약에 위반되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					
_____년 _____월 _____일					
(근로자) 성명 :			(인)		
(사용자) 대신대학교 총장			(인)		